

1. 개정이유

법 제12조의2 및 영 제16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119항공대의 소방항공기의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상 내용을 개선, 다른 조항*의 내용과 통일성을 기하고자함

* 시행규칙 제5조(구조대의 출동구역), 제8조(구급대의 출동구역)

2. 주요내용

- 시행규칙 제5조 구조대 · 제8조 구급대의 출동구역 조항의 형식을 맞추고 각 호를 추가하여 119항공대의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 사유의 명확화
 - 1. 지리적 · 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
 - 2.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
 - 3.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119항공대의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 조항 개정(제10조 제2항)
 - 시행규칙상 구조대 · 구급대의 출동구역 조항과 통일성 있게 맞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타 : 1)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규제 신설 · 폐지 등, 없음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에 따른다”를 “각 호와 같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② 119항공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 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.

1. 지리적·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
2.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
3.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119항공대의 출동구역) ① 119항공대의 출동 구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1. 2. (생략) ②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형재난 등이 발생하여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·구급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본부장에게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.	제10조(119항공대의 출동구역) ① - ----- 각 호와 같다 1. 2. (현행과 같음) ② 119항공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 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. 1. <u>지리적·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</u> 2. <u>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</u> 3. <u>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 <u><삭 제></u>